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민 주거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직원과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께사는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상생협약 체결시 이를 지원하며, 관련 시책에 이바지 한 사람에게 표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서울시민들의 일·생활 균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